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보 호 소 년 등 의 처 우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법무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0. 10. 2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2021. 4. 21. 시행)으로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 등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필요

3. 주요내용

가.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의 법률 상향 입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5조의2 ~ 제25조의6 신설)

종전에는 ‘대통령령’에 근거를 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보호소년 등의 처우·징계 등을 심의하였으나, 보호소년등에 대한 처우·징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둬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시행규칙’을 ‘시행령’에 상향 입법함

나.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법 제20조제4항에서 위임한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소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실시 할 수 있는 경미한

의료행위의 범위를 ‘상처의 치료, 응급처치, 의약품 투여’ 등으로 열거하여 규정, 보호소년 등이 의사가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요청이 법에 신설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요청제한 사유 등을 규정(안 제103조 신설)

법 제54조에 소년원에서 퇴원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소년이 퇴원한 후 3년 동안 그 소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의 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제한 사유,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하여 소년의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장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

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초·중등교육 소년원”을 “초·중등교육소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을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료·재활교육 소년원”을 “의료 재활소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인성교육 소년원”을 “인성교육 소년원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의2 본문 중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원장”을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처우심사위원회의”를 “법 제15조의2의 보호소년등 처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의료·재활교육”을 “의료재활”로 한다.

제11조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외부병원”을 “외부의료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 중 “보호소년 등”을 “보호소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 본문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의 이송·외출(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통학·통근취업·징계·포상·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에 관한 심사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징계·포상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년원
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그 재직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의3(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4(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5(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2명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5조의6(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제25조의5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2장제6절의 제목 “면회·서신·외출 등”을 “면회·편지·외출 등”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이내”를 “내외”로 한다.

제38조제2호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제1호 중 “공범”을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7일”을 “주말·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7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외부병원 의료조치)”를 “(외부의료기관 의료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병원”을 “의료기관”으로 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제46조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를 “소년원등에서”로,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를 “소년원등이”로, “통보”를 “신고”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등”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를 “법 제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퇴원”을 “출원”으로 한다.

제58조제2항 중 “법 제2조제2항제3호”를 “법 제3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교육연수원”을 “교육연수원, 법무연수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과”를 “장 등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처우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70조 중 “장학(裝學)”을 “장학”으로 한다.

제75조 중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을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퇴원”을 “출원”으로 한다.

제82조의 제목 “(종교지도 등)”을 “(종교활동 등)”으로 한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 중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을 각각 “소년원 등”으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을 “소년원 등”으로, “퇴원된”을 “출원한”으로 한다.

제88조제2항 단서 중 “여자”를 “여성”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제3호 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제6장제4절(제10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① 법 제54조의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범죄경력자료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을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보, 취득된 범죄경력자료 등은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방법·자료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 운영) ①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년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제2조(소년원의 기능별 분류 · 운영) ① -----		
1. <u>초 · 중등교육 소년원</u> : 「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초 · 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소년원		-----		
2. <u>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u>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소년원		---- <u>제5조</u> -----		
3. <u>의료 · 재활교육 소년원</u> : 약물 오 · 남용, 정신 · 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소년원		-----.		
4. <u>인성교육 소년원</u> :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 · 교육하는 소년원		1. <u>초 · 중등교육소년원</u> : -----		
② (생략)		-----		
		2. <u>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u> : -----		

		3. <u>의료재활소년원</u> : -----		

		4. <u>인성교육소년원</u> :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처우심사위원회의 설치·

<삭 제>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한 적절한 처우에 관하여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처우심사위원회를 둔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법원소년부”라 한다)로부터 위탁되거나 송치된 소년(이하 “보호소년”이라 한다)

2. 「소년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법원소년부에서 위탁한 소년(이하 “위탁소년”이라 한다)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치된 소년(이하 “유치소년”이라 한다)

② 처우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 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의 이송·외출(원장이 처우심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통학·통근취업·징계·포상 및 계속수용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에 관한 심사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징계·포상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처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호소년의 처우) 소년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호소년에게 다음 각

제5조(보호소년의 처우) -----
 -- 법 제2조제2항-----

호에 해당하는 향상된 처우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법 제
6조제2항에 따라 소년원 및 소
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생활실의
수용정원은 4명 이하로 한다.
다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
원의 기능·위치나 그 밖의 사
정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을 증대
할 수 있다.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원장
은 법 제7조 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호소년, 위탁소년 및 유
치소년(이하 “보호소년등”이라
한다)을 새로 수용할 때에는 법
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
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을 통하여 본
인임을 확인한 후 인수하고, 인
도기관에 인수서를 내주어야 한
다.

② (생 략)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소년원장은 제9조에 따른 분류
처우 대상 보호소년에 대하여

-----.

1. · 2.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생활실 수용정원) ----
----- 소년원 또는 소
년분류심사원(이하 “소년원등”
이라 한다)-----.
--- 소년원등-----

-----.

제6조(보호소년등의 인수) ①소년
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하 “원장”이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개별처우계획의 수립) ①

처우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처우계획
에는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
발훈련, 의료·재활교육, 인성
교육 등 개별 교육·처우의 방
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보호소년과 보호자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소
년원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보호소년의 개별처우계
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에는 지체 없이 처우심사위원회
의 심사를 거쳐 수정하여야 한
다.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생략)

②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외부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법 제15조의2의 보호소년등처
우·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

---.

② -----

----- 의료재활-----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개별처우계획의 수정) --

----- 위원회-----

---.

제16조(이송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외부의료기관-----

치료 중인 사람으로 이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3. (생략)

③ 소년원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면 처우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보호소년을
다른 소년원으로 이송할 수 있
다.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원장
은 법 제13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여 소년원 또는 소
년분류심사원 안에 대피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생
략)

②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호소
년 등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
치심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유의
하여야 하며, 특히 신체를 면밀
히 검사할 필요가 있으면 다른
보호소년등이 볼 수 없는 차단
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④ (생략)

2. 3. (현행과 같음)

③ -----

----- 위원회

제17조(비상사태 등의 대비) ----

----- 소년원등 -----

-----.

제17조의3(신체 검사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 보호소
년등-----

-----.

③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이하 “소년원등”이라 한다)에 보관하거나 보호자등에게 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 물품의 처리는 법 제22조에 따른다.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보호소년등의 징계대상행위에 대한 조사기간(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조사를 완료하여 치우심사위원회 개최 통보를 한 날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신 설>

⑤ -----

-- 소년원등-----

-----.

제24조의2(징계대상행위의 조사)

① -----

----- 위
원회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보호소년등처우·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소년(「소년법」 제32조 제1항제8호의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은 제외한다)의 개별처

우계획 수립

2. 보호소년에 대한 향상된 처우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보호소년의 이송·외출(원장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통학·통근취업·징계·포상·졸업사정 및 계속수용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소년의 소년원 퇴원 또는 임시퇴원에 관한 심사

5. 위탁소년 및 유치소년의 외출·징계·포상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의료재활소년원에 두는 위원회의 위원에는 의무직공무원 및 간호직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의 각 과장 및 6급 이상의 공무원

2. 소년보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 위원으로 지명된 사람은 그 재직기간 동안 재임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5조의3(보호소년등처우·징계 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4(보호소년등처우·징계 위원회 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신 설></u>	<u>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25조의5(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명 또는 2명의 간사를 둔다.</u> <u>②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소년원등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u>
<u><신 설></u>	<u>제25조의6(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 ① 제25조의5에 따른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u>
<u>제6절 면회·서신·외출 등</u> 제36조(면회 시간) ① 보호소년등의 면회는 평일[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에 교육 등 일과 진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일 1회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원장은	<u>제6절 면회·편지·외출 등</u> 제36조(면회 시간) ① ----- ----- ----- ----- ----- ----- --- <u>내외</u>-----. -----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면회허가의 제한) -----

보호소년등을 면회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면회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략)

2. 보호소년등과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함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와 교류하는 것이 보호소년등의 교육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4. (생략)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① 원장은 전화통화 허가를 신청한 보호소년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범 등 교정교육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전화통화를 하려는 경우

2. 3. (생략)

② ③ (생략)

제40조(외출 기간) 법 제19조에 따른 외출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

1. (현행과 같음)

2. ----- 소년원등 -----

3. 4.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전화통화의 제한) ① -

-----.

1. 공동으로 비행을 저지른 관계 -----

2. 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외출 기간) -----
----- 주말·공휴일 -----
등을 포함하여 7일 -----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3조(외부병원 의료조치) ① 원장은 제42조에 따른 건강진단이나 정기·수시검진 결과 중한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외부 병원에서 입원·수술 등의 처치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보호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략)

<신설>

---. -----
--.

제43조(외부의료기관 의료조치)

① -----

----- 의료기관 -----

-----.

② (현행과 같음)

제44조의2(간호사의 의료행위)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
처의 치료
2. 응급을 요하는 상황에서의
응급처치
3.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4. 환자의 영양지도 및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의료
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발생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그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허가) ① 원장은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사용할 물품을 기증하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와 교정교육에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분류심사를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56조(교육단계) ①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이 소년원에 입원할 때

제46조(감염병 발생 보고 등) ---
 --- 소년원등에서 -----

 ----- 소년원등이 ---

 ----- 신고-----
 --.

제49조(물품 등의 기증 허가) ①
 ----- 소년원등-----

 -----.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분류심사의 영역) ① 법제3조제2항제1호 -----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교육단계) ① -----

부터 퇴원할 때까지의 전 과정을 신입자교육, 기본교육, 사회복귀교육의 3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생략)

②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위탁소년, 유치소년 또는 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상담조사 대상 소년이 법원소년부의 심리 결과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소년의 소년관리기록부 원본을 해당 소년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법무부장관은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년원학교 교원을 각급학교의 교육연수원에서 연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려면 관할 교육청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소년원학

---- 출원-----

-----.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소년관리기록부) ① (현행과 같음)

② -----
----- 법 제3조제2항제3호-----

-----.

제62조(교원의 연수) ① -----

----- 교육연수원, 법무연수원 등-----.

② -----

----- 장 등과 -----
-----.

제67조(졸업사정 등) ① -----

교의 학년별 과정 이수 및 졸업 여부는 처우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70조(장학 협의) 소년원학교장은 관할 교육청의 장과 소년원학교의 학사운영에 관하여 장학(裝學)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교육청의 장은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법무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해당 교사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보호소년의 통근취업 대상 산업체는 소년원 퇴원 후 직업 선택이 쉽고 건전한 직업의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위원회 -----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장학 협의) -----

----- 장학 -----

-----.

제7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훈련) -----

----- 따른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
-----.

제76조(통근취업의 원칙) ① -----

----- 출원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종교지도 등) ①·② (생략)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87조의2(재·퇴원증명서의 발급)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사실 또는 수용되었다가 퇴원된 사실 등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

제82조(종교활동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

----- 소년

원등-----

-----.

② -----

----- 소년원등-----

-----.

제87조의2(재·퇴원증명서의 발급) -----

----- 소년원등-----

----- 출원한 -----

으로 정하는 재·퇴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
용)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시퇴
원 당시의 소년원과 임시퇴원
취소자의 현재지(現在地)의 시
·도가 달라 재수용이 지체될
우려가 있으면 임시퇴원 취소자
의 현재지와 인접한 소년원에서
소년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여자 임시퇴원 취소자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
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

1. ~ 4. (현행과 같음)

제88조(임시퇴원 취소자의 재수
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여성 -----
-----.

③ (현행과 같음)

제9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2. (생략)

3.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분류
심사 및 조사에 관한 사무

4. ~ 7. (생략)

② (생략)

<신설>

<신설>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조제2항-----

4.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103조(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의 제한 등) ① 법 제54조의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 요청은
소년원에서 퇴원한 보호소년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소년원
교정교육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
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범죄경력자료 등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을 하는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
으로 범죄경력자료 등을 취득하
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회보, 취득된

범죄경력자료 등은 법령에 규정
된 용도 외에 사용되어서는 아
니 된다.

⑤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
청 방법·자료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
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무부 법무부	
연 락 처	(02) 2110 - 3347